

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. 7. 3 선고 2015가단1751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5. 7. 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부동산 목록 (2) 기재 부동산 지상 별지 지상물(비닐하우스) 배치도 B동 비닐하우스(약 32㎡), C동 비닐하우스(약 24㎡), D동 비닐하우스(약 80㎡)를 각 철거하고,
나.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같은 목록 (1) 기재 부동산 지상 별지 지상물(비닐하우스) 배치도 A동 비닐하우스(약 105㎡)를 각 인도하며,
다. 16,000,000원 및 2015. 1. 1.부터 위 각 철거 및 인도완료일까지 월 1,000,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(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판결)

판사남기정

별지